접수번호	이의신청 2017-19	결정일	2018.2.26.
제 목	신청인들이 이 건 법인의 부동산 취득일 이후에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면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서 신청인들의 지분이 증가하여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사인 간에 작성된 주식명의신탁 계약서, 주식명의신탁대금 지급 계약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7지0748, 2017.11.23. 참조) 신청인들이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결정이유	아래 참조		

1. 처분요지

신청인 ○○○, ○○○, ○○○, ○○○은(이하 “신청인들”이라 하며, ○○○은 “신청인 대표”라 한다)은 배우자 및 직계혈족으로서 2014.5.9. 설립된 경상북도 ○○○ ○○○ ○○○○○0○ 000에서 ○○○○○○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의 주주들 중 일부이다.

처분청은 2017년 7월 주식회사 ○○○○○○○(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9.8.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신청외 ○○○로부터 ○○○에게로 20%, 2016.10.24.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신청외 ○○○로부터 ○○○에게로 11.11%의 주식이 각각 이동되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6.11.29. 대통령령 제276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청인들의 소유주식 비율이 2016.9.8. 50%에서 70%

로, 2016.10.24. 70%에서 81.11%로 증가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주식변동일 현재 이 건 법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장부가액 0,000,000,000원의 81.11%에 해당하는 0,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 합계 00,000,000원(가산세 포함)에 대하여 2017.8.2.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2017.9.10. 부과·고지하였다.

신청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신청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표 ○○○은 이 건 법인의 실사주로서, 대표이사인 신청외 ○○○로부터 2015.11.16. 00,000주를 매매취득 후 명의신탁 하였다가, 2016.9.8. 신청인 대표 ○○○(○○○의 자)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2015.11.16. 이미 신청인들의 이 건 법인에 대한 소유주식 비율은 70%에 해당하며, 이 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경상북도 ○○○ ○○○ ○○○○○0○ 000 외 토지 및 건물(이 건 법인의 제조공장,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그 후인 2015.12.3.에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법인장부가액에 신청인들의 최종 소유주식 비율 81.11%를 곱하여 산출한 취득세 중 70%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다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신청인들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 계약서, 주식명의신탁대금 지급 계약서

사본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준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의 계좌에서 명의수탁자에게 일정 금액이 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주식양수대금으로 지급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법인이 2015년, 2016년 각각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나타난 바에 따라 2016.9.8. 신청인들의 소유주식 비율이 50%에서 70%가 되었고, 2016.10.24. 70%에서 81.11%가 되었으므로, 신청인들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법인장부가액의 81.11%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판단

이 건 이의신청의 쟁점은 신청인들이 이 건 법인의 부동산 취득일 이후에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청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건 법인은 2014.5.9. ○○○○○ ○○○ ○○○ ○○○○○○ 00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 후 2차례 본점소재지를 이전한 다음, 2015.12.7. 본점소재지를 경상북도 ○○○ ○○○ ○○○○○0○ 000로 이전하였으며, 대표이사는 ○○○로 되어 있음이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나타난다.

(2) 신청인들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신청인 대표 ○○○은 세대주, ○○○는 배우자, ○○○과 ○○○은 ○○○의 자(子)로 되어 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내용>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나이(2018년 기준)
세대주	○○○	000000-0******	00세
배우자	○○○	000000-0******	00세
자	○○○	000000-0******	00세
자	○○○	000000-0******	00세

(3) 이 건 법인이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5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2015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	기초		변동상황					기말		비고
	주식수	지분율	증가주식수			감소주식수		주식수	지분율	
			양수	유상증자	증여	양도	증여			
합 계	0,000	100%	00,000	000,000	0,000	00,000	0,000	000,000	100%	
○○○	0,000	25%					0,000			
○○○	0,000	25%		00,000		00,000	000			
○○○				0,000				0,000	3.33%	
○○○	0,000	25%	00,000	00,000	0,000			00,000	35.56%	
○○○				00,000	0,000	00,000				

○○○				00,000				00,000	20.00%	자
○○○				00,000				00,000	20.00%	세대주
○○○				00,000				00,000	11.11%	
○○○				00,000				00,000	10.00%	배우자
○○○	0,000	25%					0,000			

※ 신청인들 중 3명(○○○, ○○○, ○○○)의 지분율 : 기초 0% → 기말 50%

<2. 2015년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주식양도자	양도일자	취득일자	주식수
합 계			00,000
○○○	2015.10.12.	2014.05.09.	000
		2015.02.10.	0,000
		2015.04.23.	0,000
		2015.08.07.	0,000
○○○	2015.10.12.	2015.01.19.	0,000
		2015.02.10.	0,000
		2015.04.23.	0,000
		2015.08.07.	0,000

※ ○○○, ○○○의 양도주식 00,000주는 ○○○가 취득하였음

(4) 이 건 법인이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6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2016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	기초		변동상황					기말		비고
	주식수	지분율	증가주식수			감소주식수		주식수	지분율	
			양수	유상증자	증여	양도	증여			
합 계	000,000	100%	00,000	000,000	0,000	00,000	0,000	000,000	100%	
○○○	0,000	3.33%						0,000	3.33%	
○○○	00,000	35.56%				00,000		00,000	15.56%	
○○○	00,000	20.00%						00,000	20.00%	자
○○○			00,000					00,000	20.00%	자
○○○	00,000	20.00%						00,000	20.00%	세대주
○○○	00,000	11.11%				00,000				
○○○	00,000	10.00%	00,000					00,000	21.11%	배우자

※ 신청인들(○○○, ○○○, ○○○, ○○○)의 지분율 : 기초 50% → 기말 81.11%

<2. 2016년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주식양도자	양도일자	취득일자	주식수
합 계			00,000
○○○	2016.09.08.	2015.11.23.	00,000
○○○	2016.10.24.	2015.11.23.	00,000

※ ○○○의 양도주식 00,000주는 ○○○이, ○○○의 양도주식 00,000주는 ○○○가 각각 취득하였음

(5) 신청인들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대금 지급 계약서'(작성일 : 2015.11.14.) 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신청외 ○○○는 이 건 법인의 주식 00,000주를 2015.11.14. ○○○에게 양도하고 2015.11.23. 유상증자시 ○○○가 취득예정인 0,000주도 ○○○에게 양도하며, ○○○은 전체 00,000주를 ○○○에게 명의신탁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주식 양도대금 000,000,000원 중 0,000,000원은 2015.11.14. 현금지급하고 나머지 000,000,000원은 2015.11.16. ○○○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고 되어 있다.

<주식명의신탁대금 지급 계약서 내용>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양도인	양수인	주식수	대금 지급		
					지급일	금액	지급방법
합 계						000,000,000원	
○○○	○○○	○○○	○○○	00,000주	2015.11.14.	0,000,000원	현금지급
					2015.11.16.	000,000,000원	계좌입금

(6) 신청인 대표 ○○○을 명의신탁자로 하고 신청외 ○○○를 명의수탁자로 하여 작성된 '주식명의신탁 계약서'(작성일 : 2015.11.23.)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명의신탁 계약서 내용>

명의신탁일	1주당 액면가	신탁 주식수	비고
합 계		00,000주	전체 000,000,000원 중 0,000,000원 현금지급 000,000,000원 계좌입금
2015.11.14.	5,000원	00,000주	
2015.11.23.	5,000원	0,000주	

(7) 신청인들이 제출한 신청인 대표(○○○)의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서를 보면, 2015.11.16. ○○○에게 000,000,000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 건 법인은 2015.12.3. 경상북도 ○○○ ○○○ ○○○ 0000-0번지 토지 0,000.0㎡ 및 지상 공장 건물 000㎡를 취득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9) 처분청은 이 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신청인들이 이 건 법인에

대한 소유주식 비율이 50%인 상태에서 이 건 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2016.9.8. ○○○이 00,000주를 취득하여 신청인들은 최초로 과점주주(70%)가 되었고 그 후 2016.10.24. ○○○가 00,000주를 취득하여 신청인들의 소유주식 비율이 81.11%가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각각 성립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신청인들의 이 건 법인에 대한 소유주식 비율(81.11%)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2017.9.10. 부과·고지하였다.

(10) 신청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신청인들은 이 건 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소유주식 비율이 70%로서 사실상 과점주주가 되었음이 주식명의신탁대금 지급 계약서, 주식명의신탁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확인되므로 그 후 신청인들의 소유주식 비율 증가분(11.11%)에 대한 취득세만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소유주식 비율(70%)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하겠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면 되며,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제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법인의 2016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따르면, 신청인들 중 ○○○ 및 ○○○가 이 건 법인의 부동산 취득일(2015.12.3.) 이후인 2016.9.8. 및 2016.10.24. 양도자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신청인들의 지분이 증가(50%→70%, 70%→81.11%)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신청인들은 이 건 법인의 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신청인 대표 ○○○과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 사이에 작성된 주식명의신탁대금 지급 계약서, 주식명의신탁 계약서, ○○○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주식명의신탁대금 지급 계약서 및 주식명의신탁 계약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7지0748, 2017.11.23. 참조), 금융계좌에 나타난 거래금액이 실제 이 건 법인의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조심 2013지0063, 2013.3.1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신청인 대표 ○○○이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신청인들이 이 건 법인의 부동산 취득일 이후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관련규정과 제반 상황을 종합 검토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

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26.

경 상 북 도 지 사

참고 자료(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정의) ① ~ ④ (생략)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⑥ ~ ⑮ (생략)

제10조(과세표준) ① ~ ③ (생략)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 ⑦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

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생략)

□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3. (생략)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② (생략)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3.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4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 ④ (생략)